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58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이철규·박충권·김선교

송언석 • 박상웅 • 이양수

권성동 • 정희용 • 신성범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비밀취급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현행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

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방상 중요한 발명의 유출 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 여하려는 것임(안 제22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38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41 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
	죄)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
	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